



에이스보험



에이스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한국지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81 서울사티타워 19층 (우편번호 100-741)

고객서비스센터 1566-5800 팩스 02-3785-0015

www.aiceinsurance.co.kr



치아안심보험<갱신형>

보통약관&특별약관

본 약관내용 중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적용은
치아안심보험<갱신형> 증권에 명기된 것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치아안심보험<갱신형>

가입고객님께

저희 치아안심보험<갱신형>을 이용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약관 및 첨부된 치아안심보험<갱신형> 증권은 계약자
여러분께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꼭 읽어보시고, 안전하게 보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인터넷 고객센터 이용안내
고객님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험서비스를 위해 공인
인증서 로그인 후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각종 서비스를
확인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고객센터 주요업무
계약사항 조회 청약철회 신청 주소 및 연락처 변경
결제 계좌 변경 증명서 발행 요청 휴면보험금 조회
사고처리내역 조회등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ceinsurance.co.kr)
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T.1566-5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관련 금품수수는 '불법'입니다.

3	개인신용정보의제공·활용에 관한 고객관리안내문
4	치아안심보험<강신형> 보통약관
11	치아안심보험<강신형> 특별약관
11	1. 상해시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13	2. 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16	3. 질병시망 특별약관
17	4.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7	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18	6.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9	7. 자동강신 특별약관 II
20	[별첨 1] 세부 보상 기준
21	[별첨 2] 세부 보상기준상 보상하는 치료항목 정의
23	[별첨 3] 장해분류표
36	<붙임> 일상생활 활동(ADLs) 제한 장해평가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관한 고객권리안내문

이 권리안내문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함에 있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우신 고객님께 동의를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와 관련된 고객님의 권리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에이스보험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님께서 동의해 주신 목적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활용할 것이며, 동의하신 범위 이상으로 불법·부당하게 제공·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 내부에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선임하여 관련 법률보다 더욱 강화된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제공·활용에 동의해 주신 정보는 개인식별정보, 거래정보, 보험금지급정보, 질병정보입니다. 제공·활용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활용이 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 ①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성별, 국적, 직업 등 개인 식별정보 및 연락처
- ②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 ③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 사유 등 지급내용
- ④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보험계약의 체결·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활용됩니다. 이것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에이스보험이 직접 또는 국내의 타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기타 에이스보험과 업무 위·수탁 관계에 있는 자(계약적부·보험사고조사수탁회사, 계약관리를 위한 콜센터업무수탁회사, 계약자로 발송용역업체, 리서치업체, 본건 계약체결 대리점 및 모집자 등)에게 제공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보험사고의 조사, 보험계약의 상담 순보환요율의 산출·검증, 보험원리의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리서치업무,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과 관련하여 고객님께는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1. 목적 범위외의 제공·활용 중단 요청 -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서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활용하거나 동의서에 명시된 제공받는 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제공·활용의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조회·열람 및 정정 청구 권리 - 에이스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님의 정보를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으며 만일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제공 사실 통보 요구 권리 - 에이스보험이 고객님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고객님께는 정보 제공사실 통보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4. 전화수신거부 - 에이스보험과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료부터 마케팅전화를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철회 - 기 동의한 신용정보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여 에이스보험과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료부터 전화 이메일 등 직접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에이스보험 고객센터(1566-5800)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아안심보험<갱신형>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과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납부하는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종단계약의 경우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사본으로 일임으로써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리는 것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된 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료)

- ①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 ②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정기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중지)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이와 다른 시기가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작으로 하며, 시기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발행자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13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치료를 위한 종합구강검진 및 치석제거(스케일링 포함)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이 계약의 보장내용과 동일한 타계약에 이미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이 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청약의 철회)

- ① 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은 상해로 인하여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병원·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보험(세부보상기준에서 정한 치과관련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질병은 상해사고와 관련없는 치통, 충치(치아우식증), 풍치(치주염)등을 말하며, 치과치료를 위한 종합구강검진 및 치석제거(스케일링)를 포함합니다.
- ③ 제1항의 치과 의사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④ 제1항의 질병치료를 위한 종합구강검진 및 치석제거(스케일링) 제외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및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그 질병치료를 위한 종합구강검진 및 치석제거(스케일링)제외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치과치료를 위한 종합구강검진 및 치석제거(스케일링) 제외)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치료를 위한 종합구강검진 및 치석제거(스케일링) 제외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제5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최초 청약일로부터 보험계약의 연속되는 기간이 5년을 지난 것을 말하며 제13조(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⑦ 보험료납입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계약인 경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계약의 해지 후 보험료납입특별약관 제4조(계약의 부활)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6항의 최초 청약일로 적용합니다.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치과의료비 또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치과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단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별첨 1]세부보상기준에서 규정한 보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치과 의료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리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타락, 폭동, 소요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
8.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9. 위 제8조 이외의 방사선을 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한 행위를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공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클라이더 조정 스카이 다이빙, 행글라이딩, 비행선(기구), 낙하산, 번지점프, 스쿠버다이빙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사변,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단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선수로 등록된 경기 종목의 프로연맹, 아마추어 경기연맹(협회 포함) 또는 소속 단체의 관리하에 행하는 운동경기(연습 경기를 포함합니다)

제8조(치과의료비보험금)

- ① 회사는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별첨 1] 세부보상기준에 명시된 치료항목별 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의 치료항목별 보상금액을 대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아래의 치료항목에 대해서는 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기간중 각각 1회에 한하여 보상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치아치료(치아미백제외)를 위한 종합구강검진
 - 치아치료(치아미백제외)를 위한 치적제거(스케일링)
- ② 회사가 보험기간중 위 1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치과의료비의 총 누적 한도액은 1,000,000원으로 합니다.
- ③ 위 1항의 하나의 상해 또는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합니다)으로 2회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보상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하나의 상해 또는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치료라 하더라도 치과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치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치료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④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하나의 상해 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
- 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 또는 질병발생일로부터 계속중인 치료에 대한 치과의료비는 위 1항 ~ 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9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0조 (보험나이의 계산)

- ①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나이가 계산치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나이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나이가 이 보험의 가입나이 범위에 있을 때에는 실제 나이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11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강장진)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한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상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다른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용어풀이)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에 보험회사에서 사전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계약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기용 운전자가 영연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를 정할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체제없이 사인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급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직무 또는 나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를(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함)내의 직업, 직무 또는 나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를(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함)내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직무 또는 나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나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등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험금을 사인으로 동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사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1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릴 때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2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함)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 ⑤ 제3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익을 지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 ⑥ 제3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제12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⑦ 손해가 제3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5항 및 제6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변경

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15조 계약의 무효

-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②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용어풀이)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16조(보험료의 환급)

-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날)부터 1년간 치년도(둘째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날)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잔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제17조 손해의 통지

-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8조(보험금 청구서 구비서류)

-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치료비 영수증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인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8조(보험금 청구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기지급보험금 청구잔치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④ 회사가 제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장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는 제3조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보험금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손해

제21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현금급부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용어풀이)

소멸시효는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22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자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무정보)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를 따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태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2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5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른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2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정보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9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치아안심보험(갱신형) 특별약관

상해사망 및 80% 이상 고도후유장애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태로 인하여 그 직접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및 그 손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애"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첨3】참조)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의 고도의 후유장애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 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을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태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항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위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기타, 흥행이나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공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사망보험금)

-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합니다.

제4조(80%이상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고도 후 장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 1년 이내에 신체적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 분류표(별첨3)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의 고도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80%이상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4항의 80%이상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④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기증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약관의 보장개시일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와 이외에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5조(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상해사망 또는 80%이상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 또는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각각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4항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3조의 규정에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각각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함은 대로 신체(약수, 약증, 약안, 약지 등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함)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라 “후유장애”라 함이다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 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서균성 음식을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이하 “수익자”라 함이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형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연료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위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투등반(전투작전)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방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한다), 클라이밍,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항물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아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단 공공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후유 장애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라 “후유장애”라 함이다된 경우에는 장애분류표(별첨3)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을 상해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애보험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상해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애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애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애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애분류표에 장애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지급률에 정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애가 이미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기중된 때에는 최종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애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애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애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애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로 장애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애
 2. 위1호 이외에 이 약관의규정에 의하여 후유장애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애 또는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애

제4조(보험금의 지급 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상해후유장애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인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인감증서 포함)
 4.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3조의규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질병사망 특별약관

제1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가)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가)에서 정한 사항중 제4항 질병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파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애"라 합니다)되어 장애분류표【별첨3】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파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파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며, 80%이상 후유장애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애보험금으로 파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애로 인정하고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후유장애 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애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일이하 "사고일"이라 합니다)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애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애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애분류표에 장애판정 시기가 별도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애는 파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후유장애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동일한 질병으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제1항의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 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⑨ 제8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최초 청약일로부터 보험계약의 연속되는 기간이 5년을 지난 것을 말하며 보통약관 제3조(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⑩ 보험료분납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계약인 경우 보험료의 납입연료로 인한 계약의 해지후 보험료분납특별약관 제4조(계약의 부활)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9항의 최초 청약일로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① 계약자, 파보험자(보험대상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4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 또는 파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래된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는 사점을 보험료의 영수사점으로 합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회사의 보장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② 제1항의사고카드와 합은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회) 나누어 회사에 납입합니다.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분납보험료를 다음 방법에 따라 정한 날짜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할 회수	분납보험료 및 납입시기	
	제1회 분납보험료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
2회	계약을 체결할 때 연납보험료의 1/2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보험증권보험가입중에서 기재된 납입7일 안에 보험료의 1/2

분할			분납보험료 및 납입시기
회수	제1회 분납보험료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	
4회	계약을 체결할 때 연납보험료의 1/4	제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날로부터 매 3개월마다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에 기재된 납입기간 안에 3회에 걸쳐 매회 보험료의 1/4	
12회	계약을 체결할 때 연납보험료의 1/12	제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월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에 기재된 납입기간 안에 11회에 걸쳐 매회 보험료의 1/12	

②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회의 제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 ① 회사는 제2회 이후의 분납보험료가 제2회분납보험료의 납입에서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기간 내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계약의 해지를 예고하고, 그 후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최고기간의 만료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계약은 해지됩니다

제4 조(계약의 부활)

- ① 계약의 효력상실 후 30일 안에 계약자가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 ② 제 4항의 경우 계약이 효력상실된 때로부터 미납입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5 조(추가보험료의 납입)

- ① 회사가 보통약관 제12조(계약후 알릴 의무)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보험료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그 전액을 일시불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계약자가 제 4항의 추가보험료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추가보험료 영수전에 발생한 사고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계약사항 변동전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6 조(미납입보험료의 공제)

회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이 이미 받은 보험료를 넘을 때에는 미납입보험료 전액을 공제한 전액을 드립니다.

제7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 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보험료분납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료를 분납하는 경우 제2회차 이후의 보험료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자동납입합니다

제2조(자동 납입 신청)

계약자는 보험계약과 동시에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별첨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은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해당일의 계약자가 희망하는 일자에 회사와 합의하는 일자로 합니다

제4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거래은행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장자된 경우에는 즉시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동갱신특별약관 II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회사와 계약자간에 보험계약의 자동갱신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을 때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의 갱신)

- ①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만기일의 15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내용(이하 『갱신전 보험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의 만기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된 보험계약이라 『갱신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것
 2. 갱신전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3. 갱신전 보험계약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갱신된 보험계약이 최초로 가입한 계약으로부터 (5)회차 이하일것
- ②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전 보험계약의 특약중 '손해보상후의 계약 조항에 따라 특약이 소멸된 경우 또는 갱신이 제한된 경우 해당 특약을 제외하고 갱신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이 자동갱신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조(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자동갱신된 보험료를 당해 계약의 약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기간 내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계약의 해지를 예고하고, 그 후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최고기간의 만료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계약은 해지됩니다

제4조(갱신 적용)

- ①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약관을 적용하며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 적용),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②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파보험자(보험대상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첨 1]

세부 보상 기준

	치료 항목	보상구분	보상금액(원)	비 고
검진	치아치료(치아보존제외)를 위한 종합구강검진	보상	3,500	1회에 한해 보상
	치통의 응급 임시치료 및 임시 차치	보상	15,000	
구강 위생 및 치주	치아치료(치아보존제외)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	보상	40,000	1회에 한해 보상
보존 치료	이말감 충전	보상(치아당)	7,500	
	골드 인레이 / 골드 온레이	보상(치아당)	50,000	
	컴퍼짓 레진	보상(치아당)	50,000	
발치	단순 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보상(치아당)	7,000	
	정교한 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및 치근)	보상(치아당)	9,000	
	매복된 치아의 발치	보상(치아당)	21,000	
	구내방사선 및 교악방사선 사진	보상	4,500	
엑스레이	두개골 후전방향 촬영 및 측방 촬영, 인면골 조사 필름	보상	5,000	
	엑스레이 추가/교악방사선 사진	보상	4,500	
	파노라마 사진	보상	6,500	
치주 치료	스플린팅	보상(치아당)	9,000	
	치은절제술, 치은성형술	보상(치부당)	13,500	
	치근절단술	보상(치아당)	16,500	
근관 치료	1개 근관/엑스레이 포함	보상	10,500	
	2개 근관/엑스레이 포함	보상	16,000	
	3개 근관/엑스레이 포함	보상	22,500	
	치수절단술	보상	7,000	

주 상기 보상기준에 없는 불소도포, 실란트(치아보존), 크라운, 보철 의치 임플란트, 치열교정 및 치아 마백 등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별첨 2] 세부 보상기준상 보상하는 치료항목 정의

	치료 항목	설명
검진	치아치료 (치아보존제외)를 종합구강검진	구강내에 발생한 구강질환중 경조직질환인 단순 충치 및 충치로 인한 치수염치료(근관치료) 등을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기 위한 검진과정
	치통의 응급 임시치료 및 임시 차치	급성 및 외상에 의한 심한 통증 호소 및 구강내 통제 불가능한 출혈 및 부종 등이 발생시 지가 채우 등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즉, 사실자의 치아가 요구되는 경우로서 차치는 파보험자 (보험대상자)의 통증, 부종 혹은 출혈을 완화하고 문제를 즉각 안정화 시키는 통증 경감 치료로 제한됨
구강 위생 및 치주	치아치료 (치아보존제외)를 위한 치석제거 (스케일링)	잇몸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요소중 치면에 부착된 치석(치면부착 이물질 포함) 등을 제거하는 과정으로서 핸드 스케일러 혹은 초음파 치석제거기를 사용하는 술식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마제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치면의 표면을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포함함
보존 치료	이말감 충전	치아에 발생한 충치를 제거하고 그 제거된 빈 공간을 충전하여 기능적 형태학적 구조를 회복하는 과정이며 이때 사용된 재료는 구리, 주석, 은등의 합금(alloy)과 수은의 혼합치임
	골드 인레이 / 골드 온레이	골드인레이는 충치 치료의 한 방법이며 제거된 충치부위의 본을 떠서 치과용 합금으로 주조물을 만든 후 치아 전영 접착제를 이용하여 장착하는 방식으로 이는 크라운 및 브릿치와는 달리 치아의 일부분을 회복하는 치료술식임. 골드온레이는 충치 치료시 인레이로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선택하는 치료 술식이며, 충전해야 할 부위가 통상적으로 3면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온레이 치료술식은 치료부위 및 크기로 분류시 인레이와 crown의 중간 단계임
	컴퍼짓레진	컴포진 레진은 구강 충전 혹은 수복 재료로 사용되는 치과용 플라스틱 레진수지를 말하며 치아와 유사한 색조, 조직의 편이성 및 상대적인 치료시간 감소등의 장점 때문에 사용빈도가 높음
발치	단순 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치근)	정상 맹출된 치아를 제거하는 치료술식으로 발치검자 등 기구등을 활용하지만 잇몸 절개, 치아분할 또는 골삭제 등을 하지 않고 정상 발치하는 경우를 말함.
	정교한 발치(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및 매복된 치근)	발치할 치아가 치조골에 부분적으로 매복되어 있는 경우 또는 파절된 치아를 제거하기 위한 술식이며 단순 발치가 불가능한 경우임
	매복된 치아의 발치	치관의 2/3이상 이 치조골 또는 잇몸내에 매복된 경우이며 골삭제와 치아분할술이 필요한 치료술식임
엑스레이	구내방사선 및 교악방사선 사진	구내방사선은 수개의 치아 및 치주 상태를 감진하기 위한 통상적인 방사선 촬영방법으로 필름을 구강내의 목적 치아부위에 위치 시킨후 촬영하는 방식이며 상대적으로 다 촬영방법에 비해 선명도가 뛰어나. 교악방사선은 주로 대합치아 상하간의 교합관계 확인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촬영 술식임

	치료 항목	설명
엑스레이	두개골 후전방향 촬영 및 측방 촬영 인면골 조사 필름	일반적인 구내 방사선 촬영으로 얻을 수 없는 경우 즉 전체적인 gross data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두개골악골 포함 성장도 및 방향 좌우 대칭관계, 상악동 상태파악 그리고 외상에 의한 두개골의 골절, 골양 및 골질의 파열을 위한 촬영 술식임 이러한 촬영을 통해 확보된 결과는 다수의 치료술식에 적용되며 가장 활용도가 높은 치료술식은 교정, 임플란트 및 외과적 치료등임
	엑스레이 추가 /교익방사선 사진	엑스레이 추가 촬영시 / 교익방사선은 주로 대합치아 상호간의 교합관계 확인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촬영 술식임
	파노라마 사진	환자의 치열상태, 상하악골, 상악동, 하치조신경 경로등 개개의치아보다는 전반적인 검진을 하기 위한 촬영술식임
치주치료	스플린팅	치조골이 약해서 치아 스스로 지탱하지 못할 경우, 회복가능성이 있는 치아들을 임시적으로 와이어 혹은 레진으로 고정시키는 치치
	치은절제술, 치은성형술	치은의 이상적 증식등으로 치은 또는 치주조직의 모양이나 형태가 정상적인 비율을 가지지 못한 경우 치아를 덮고 있는 잇몸을 절제함으로써 폭과 길이의 비율 이상적으로 맞춰주기 위한 술식임
근관치료	치근절단술	치아의 치근단 부위에 농양 낭종 또는 기타 염증등이 존재할 경우 이들과 이들에 의해 감염된 치근의 말단부위를 동시에 제거하는 술식이며 근관치료와 보철적 수복이 수반됨 적응증은 이 술식이 시행 후에 해당 치아의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국한 됨
	1개 근관 /엑스레이 포함	치아 속에는 치수라고 하는 조직이 있으며 이 치수는 신경과 혈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치아에 영양분, 수분 등을 공급하고 감각을 느끼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치수가 충치 등으로 인하여 감염되어 염증 상태에 빠진 것을 치수염이라고 하고, 치아뿌리 부분의 치근단골조직에도 염증을 일으키게 될 경우, 이때 시행하는 치료를 근관치료(신경치료)라고 함. 즉 통상적인 개념의 근관치료는 감염된치수조직을 특수한 기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근관을 소독하여 무균상태로 유지한 후에 인체에 무해하고 용해되지 않는 재료를 이용하여 근관을 채워주는 과정까지를 말하며, 엑스레이를 포함함.
	2개 근관 /엑스레이 포함	
	3개 근관 /엑스레이 포함	
치수절단술	치수절단술	치수 절단술이란 (치아내부에 존재한) 치수 중에서 치수강(Pulp chamber)내의 치수를 절제하고 F.C. (Formocresol)등을 이용하여 치수관(Pulp canal)내의 치수를 고정하는 치료술식을 말하며 적응증은 대개 영구치 맹출 전의 선행 유치가 감염된 경우 또는 충치 및 외상부부분적 파절등에 따른 영구치의 비하농성 급성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치료술식임

[별첨 3]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기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인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적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착취(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 1) 하나의 장해가 관할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7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간병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간병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장애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를 남긴 때	10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사시합착, 안검을 남긴 때	5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사력장애의 경우 공인된 사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인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노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 4) 인구운동장애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애정도를 평가한다.
- 5) "인구의 뚜렷한 운동장애"라 함은 인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시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장면 양안시에서 복사(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6) "인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시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노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도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노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물(막) 등에 의해 약간까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약간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인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애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청력장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 실시 후 장애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결부가 1/20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0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도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로 평가한다.

3. 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 장애판정기준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애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애와 각각 더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00

장해의 분류	지급률(%)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이레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① 구순음(ㄱ, ㅋ, ㆁ)
 - ② 치설음(ㄷ, ㄸ, ㄹ)
 - ③ 구개음(ㄱ, ㆁ, ㆁ)
 - ④ 후두음(ㅇ, ㅎ)
-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열된 경우를 말한다
- 10) 유상악치 또는 가교악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재대관 또는 구의 정착치와 포스트, 인메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시교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0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40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cm(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cm(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cm(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나. 장애판정기준

-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 척추(등뼈)의 장애는 퇴행성 기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련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심한 운동장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뚜렷한 운동장애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 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 약간의 운동장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cm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미디안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
-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mm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서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①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 ②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 및 기형상태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 ①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 ②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천장골절 또는 치골분할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성문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③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④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취급한다.

8. 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팔에 기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팔에 기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①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 ②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애(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상완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외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와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서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0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서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0 이하로 제한된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장해의 분류	지급률(%)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髖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상완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외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와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서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0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서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0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배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표포적(cor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상태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장도를 측정한다.

다 지압률의 결정

- 1) 16지(다리와 발가락의 장애 지압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압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압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0. 손가락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압률(%)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마다)	10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무엇한 장애를 남긴 때	30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무엇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무엇한 장애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지관절)이라 한다.
-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5) "손가락에 무엇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기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기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관절(근위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더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6) 한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압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1.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압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마다)	5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무엇한 장애를 남긴 때	20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무엇한 장애를 남긴 때	8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무엇한 장애를 남긴 때(발가락마다)	3

나. 장애판정기준

-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발가락에 무엇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기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 5) 한 발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압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압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75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무엇한 장애를 남긴 때	50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20

나. 장애의 판정기준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무엇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절제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을 절제내었을 때

-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3) *홍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애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4) 홍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불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라 장애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애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지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정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신경계
- ① "신경계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불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의 57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불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되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신경계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애(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애

평가를 유보한다.

- ⑤ 장애인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 2) 정신행동
- ① 상기 정신행동장애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애에 대해서는 『불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선정하여 지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상태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태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애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심리학자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의만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MRI), 뇌전신화 촬영(CT),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뢰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와 외상후 증후군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⑧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간병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간병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간병과 행동감시를 위한 간병을 구별하여야 한다.
- 3) 치매
-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애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신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② 치매의 장애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 4) 간질
- ① "간질"이라 함은 불발작 뇌파 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애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애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땅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을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번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 전히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머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